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"내무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 (업무의 위탁)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·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
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④위탁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